제179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13. 11. 26

行 政 委 員 會
專門委員 金基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250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·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

나.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 확대

○ 대형마트 범위

-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규모점포 포함

○ 영업시간 제한 범위

- 오전 0시~오전 8시 ➔ 오전 0시~오전 10시

○ 의무휴업 범위

-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➔ 매월 공휴일 중 2일

※ 단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

○ 영업제한 적용 면제조건

- 연간 농수산물 매출비중 51% 초과시 ➔ 55%로 상향

다.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,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, 제8조제4항, 제12조의2, 제13조의3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,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

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8조부터 안제12조까지에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에 규정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

-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,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고,

- 안 제14조의2제1항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고,

· 영업시간 제한 범위 : 오전 0시~오전 8시 ➔ 오전 0시~오전 10시

· 의무휴업 범위 :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➔ 매월 공휴일 중 2일

※ 단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

-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의 기준을 변경하였음

·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%에서 55%로 상향 조정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,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,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, 검토결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참 고 자 료

1 유통산업발전법

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"대규모점포등"이라 한다)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[본조신설 2013.1.23]

제3장 대규모점포 등

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1.23]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1.23]

제13조의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(이하 "전통시장등"이라 한다)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7.22>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   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 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4.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3.4.23]

제4조의3(협의회의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

다.
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·시간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4.23]